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67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조배숙 · 백종현 · 곽규택
장동혁 · 유상범 · 김승수
고동진 · 박성훈 · 박충권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재산관리인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라 한다)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산관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허가서의 원본 또는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재산관리인이 제출한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산관리인이 신청한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신청하여 금융거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u>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u> <u>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u> <u>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u> <u>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u> <u>한다.</u> <u><신 설></u>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등) ① -----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 -- ----- ----- ----- -----. 1.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u>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u>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u> <u>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u> <u>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u> <u>제3호의 금융거래(이하 이 조</u> <u>에서 “금융거래”라 한다)</u>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상속· <u>유증재산등의 보호를 위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③ <u>재산관리인은 「금융실명거</u> <u>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u> <u>(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u> <u>이라 한다)과 제1항에 따라 허</u>
② (생 략) <u><신 설></u>	

가를 받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허가서의 원본
또는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으로
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
융회사등은 그 신청에 따른 금
융거래를 하기 전에 재산관리
인이 제출한 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산관리인이 신청한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